

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

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「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2. 13.

시 흥 시 장

① 사업개요

- (사업 대상)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* 및 '09.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** 또는 '04.12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* 된 지게차, 굴착기

*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(DPF)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(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.mecar.or.kr (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) 참고2예시 참조

** 도로용 3종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(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)

*** Tier-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착기로 '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, 75kw 이상 130kw미만은 '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'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

- (접수기간) 2023년 2월 21일부터 ~ 예산 소진시 까지

- (접 수 처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☎1577-7121)

- (신청서 제출방법) 인터넷, 등기우편, 이메일

- ① 인터넷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<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>)

※ 문의 : ☎032-590-5023, ☎1577-7121

- ② 등기우편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※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- ③ 이메일 : 1577-7121@aea.or.kr

- (청구서 제출 방법) 등기우편 제출 (팩스, 이메일 등 불가)

2 지원대상 : ①~ ④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-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 - 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
-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(도로용 3종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- ④ 정부·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(도로용 3종 포함)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
 - ※ 다만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

※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

3 신청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

1. 신청서 접수 방법

인터넷	○ 인터넷 신청방법 (시스템 관련 문의 032-590-5023, 5028) “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”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 → 로그인→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→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→ 휴대폰 본인인증→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→ 저공해조치방법(조기폐차) 선택→ 저공해신청(완료) ■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[참고 2] ○ 구비서류 없음, 크롬(chrome) 권장
등기우편	○ 등기우편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○ 구비서류 : ① 조기폐차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, ② 자동차등록증(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, ③ 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,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: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, 저소득층 ⑤ 해당자 :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○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
이메일	○ 이메일 주소 : 1577-7121@aea.or.kr ○ 구비서류 (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) ① 조기폐차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, ② 자동차등록증(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 ③ 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: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, 저소득층,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○ 접수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

2. 지원 절차

① 조기폐차 신청

- (소유자) 우편, 이메일,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



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

-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(지급대상 여부, 산정 등)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(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)



③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)

-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)을 실시 후 통보(문자메시지 등)
-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)을 받고 폐차 말소 하여야 함(확인 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)



④ 보조금 청구

- (소유자)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(말소사실증명서 사본, 소유자 통장사본, 해당 서류 등)

※ 청구기한 : ②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(다만,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)



⑤ 보조금 지급

- (시흥시)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(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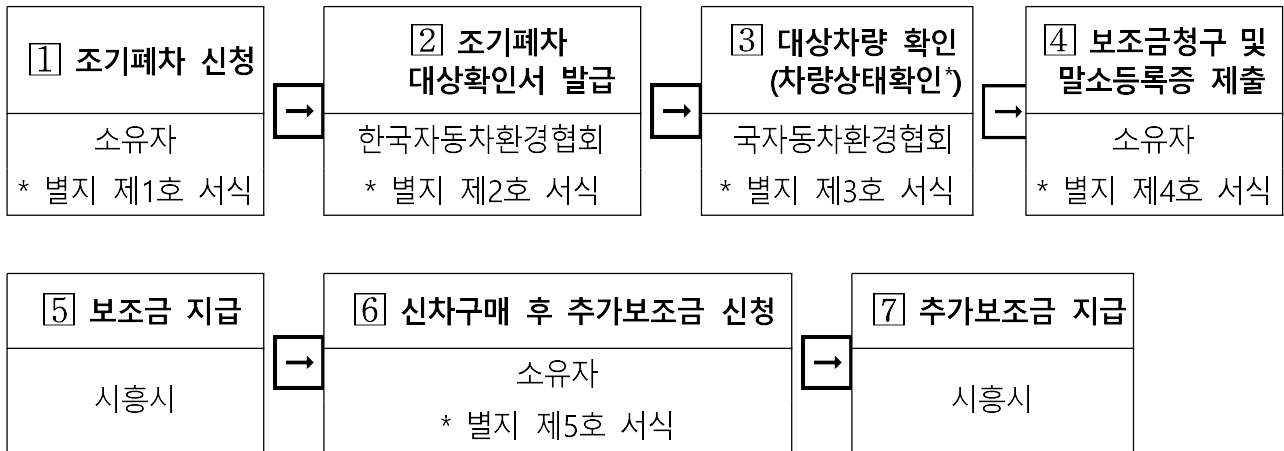
⑥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

- (소유자)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('22.11.1. 이후 등록 인정)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



⑦ 추가구매 보조금 지급

- (시흥시) ⑤와 동일



④ 지원금액

○ (조기폐차 기본 지원)

구분	총중량 3.5톤 미만		총중량 3.5톤 이상
	승용자동차 (승차정원 5인승 이하)	그 외 자동차	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지원율	차량기준가액의 50%	차량기준가액의 70%	

- ◎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 해당차량 :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범위 내)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'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' 또는 '차상위계층확인서'를 제출(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)
 - ※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
- ◎ 소상공인 해당차량 :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범위 내)
 -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<http://sminfo.mss.go.kr/>에서 발급)
 - ※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
- ◆ 저소득층(생계형)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
- ◎ 저감장치 부착 불가(5등급 중 총중량 3.5톤 미만 해당)에 따른 추가 지원금(화물·특수차량 100만원, 그 외 차량 60만원)과 4·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(50만원)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
 -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(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) ※ 단,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

○ (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)

구분	총중량 3.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		50만원 추가지원 (무공해차 구매시)
	신차	중고차	
지원율	차량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	차량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	

구분	총중량 3.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		50만원 추가지원 (무공해차 구매시)
	신차	중고차	
지원율	차량기준가액의 30% 추가 지원	차량기준가액의 30% 추가 지원	

구분	총중량 3.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		지게차,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 (무공해차 구매시)
	신차	중고차	
지원율	차량기준가액의 200% 추가 지원	차량기준가액의 100% 추가 지원	

※ 지게차, 굴착기는 신차(200%)만 지원 가능(중고차 지원 불가)

- ex1)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폐차→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구매(추가지원 불가)
ex2)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폐차→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구매(추가지원 불가)
ex3)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폐차→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(추가지원 가능, 단 조건 만족시)
ex4)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→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구매(추가지원 가능, 단 조건 만족시)

< 추가구매 지원조건 상세 >

구 분		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
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미만	승용자동차 (5인승 이하)	-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.5톤 미만의 1·2등급(휘발유, 가스, 하이브리드(경유하이브리드 제외)) 자동차를 '22.11.1.이후 신규 등록(중고 여부 무관 / 이륜차 및 상품용*은 제외)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%를 추가 지원하고,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(전기, 수소)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*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
	그 외 자동차	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.5톤 미만의 1·2등급(휘발유, 가스, 하이브리드(경유하이브리드 제외)) 자동차를 '22.11.1.이후 신규 등록(중고 여부 무관, 상품용은 제외)시 차량기준가액의 30%를 추가 지원하고,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(전기, 수소)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
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.5톤 이상	배출가스 1·2등급을 신규로 등록	- 신차* 구매시('22.11.10이후 신규 등록) →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- 중고* 구매시('22.11.10이후 신규 등록, 상품용*은 제외) → 기준가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*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·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·초대형 승용자동차 **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

구 분		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
	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	• Euro6 이상 차량(중고는 '17.10.1. 이후 제작된 차량)을 '22.11.1.이후 신규 등록(이륜차·상품용 제외) 할 경우(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)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(중고는 100%)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(단,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(도로용 3종은 규격**)이 10%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) *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·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·초대형 승용자동차 **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(국토교통부 훈령)에 따름 ※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·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※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(ps)이 같거나 작은 경우(10% 범위 일부 증가) 인정 ※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% 범위 이내 증가 인정 ⇒ 환산값 확인 방법 : 환경부홈페이지<법령/정책>환경정책 <기후대기>[DPF 부착가능차량(2006.02.01.)첨부자료]
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	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	•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('22.11.1이후 신규등록,중고·이륜차·상품용 제외)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%를 추가로 지원
	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	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'22.11.1이후 신규 등록(중고·이륜차·상품용 제외)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(10% 범위 이내의 규격*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)경우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*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(국토교통부 훈령)에 따름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>

[단위 : 만원]

구 분			상한액 (기본+추가 지원)		지원율		
			5등급	4등급	기본	추가 지원	
4·5등급 자동차	총중량 3.5톤 미만	승용(5인승 이하)	300	800	50%	50%	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
		그 외	300	800	70%	30%	
	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40	720	100%	200%(신차) 100%(중고차)	
	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750	1,600			
	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1,100	2,400			
		7,500cc 초과	3,000	7,800			
	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스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		4,000	10,000			

- 1)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
- 2)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※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,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(공동명의 차량)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
- 3)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
- 4)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(5등급 해당)에 따른 추가 지원금(화물·특수 차량 100만원, 그 외 차량 60만원)과 4,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(50만원)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
- 5)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(3.5톤 미만 또는 이상)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
- 6) 차량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(지게차, 굴착기) >

(단위 : 만원)

구분		상한액 (기본+추가)	지원율	
			기본(폐차)	추가지원(차량구매)
굴착기	16톤 미만	1,650	100%	200%(신차)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
	16톤 이상 33톤 미만	2,700		
	33톤 이상	7,900		
지게차	9톤 미만	1,050		
	9톤 이상 18톤 미만	3,400		
	18톤 이상	12,000		

- 1)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
- 2)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(생계형 건설기계)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,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※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,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(공동명의 차량)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
- 3)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
- 4)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을 신규로 구매,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

ex1)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→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(추가지원 불가)

ex2) 지게차 폐기→ 굴착기 구매(추가지원 불가), 굴착기 폐기→ 지게차 구매(추가지원 불가)

5 기타 유의 사항

- ◎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'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- ◎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(2년) 을 준수하여야 하며, 미 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
※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(중복 지원 불가)
- ◎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
- ◎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
- ◎ 민원방지를 위해 시흥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 (차량상태) 가능
- ◎ 소유자 통장(계좌)으로 입금이 가능하며,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
- ◎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
- ◎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
- ◎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
- ◎ 기타 문의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-7121, 시흥시 대기정책과 031-310-5967

6 자주하는 질문

- ◎ (질문) 금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?
- (답변)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당시 저감장치(DPF)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중 지원 대상에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.
- ◎ (질문) 4등급(DPF 확인 포함),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- (답변)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<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>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※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
- ◎ (질문)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(답변) 배출가스 4,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, Tier-1 엔진('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)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.
- ◎ (질문)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(답변)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,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(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),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(차량상태)상 정상가동 판정, ④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.
※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.

◎ (질문)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?

- (답변)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. 다만,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
◎ (질문)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?

- (답변) 총중량 3.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(상한액 300만원), 4등급(상한액 800만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4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종, 형식,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,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.

◎ (질문)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?

- (답변) ①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. 또한,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,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,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,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◎ (질문)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)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?

- (답변) ①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(수도권 지역)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. ②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)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◎ (질문) 차량 고장,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?

- (답변)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,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.

◎ (질문) 공동명의(A,B)로 폐차 후 단독(A)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?

- (답변) 당초 명의자 "A"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,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"A"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.("B"의 위임장 제출 필요)

◎ (질문)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
- (답변)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보조금 청구 시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)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.

◎ (질문)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(답변) 총중량 3.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,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(계약서 불가)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%, 또는 50%를 추가 지원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.

◎ (질문)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- (답변)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※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,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

◎ (질문)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?

- (답변)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(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)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◎ (질문)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(답변)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.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,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.

◎ (질문) 위·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(개인)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- (답변) 네. 위·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[별지 제1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.
2. [별지 제2호 서식]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.
3. [별지 제3호 서식]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.
4. [별지 제4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.
5. [별지 제5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.
6. [참고 1] 위임장 1부.
7. [참고 2] 인터넷 접수방법 1부.
8. [참고 3] 차량 등급 조회 끝.

[별지 1호 서식]

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						처리기간
						10일
소유자	①성 명			②생년월일		
	③주 소					
	④전화번호			⑤FAX		
대 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또는 굴착기	⑥등록번호			⑦차대번호		
	⑧ ☐ 자동차 ☐ 건설기계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 정원(승합) 명 규격(건설기계 해당) () 중량(화물) 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			
	⑨차명(건설기계명) 및 형식	/		⑩용 도		
	⑪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			
	⑫주행거리			⑬사용 연료		
운행 상태	⑭정 기·중 합 검사 일자			⑮검사 기관		
선폐차(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) 여부 확인 ☐ 해당 ☐ 미해당		☐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 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※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				
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사항 :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(성명, 사용본거지)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						
구 비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		확인사항	수수료	
	개인	1.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. 2.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.		1.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.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	없 음	
	법인	1.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1부. 2.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				
해당자	1. 수급자(차상위 포함) 증명서 1부. 2.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. 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)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‘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’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
[별지 2호 서식]

확인번호	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									
소유자	성 명				생년월일					
	주 소									
	전화번호				FAX					
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	등록번호				차대번호					
	☐ 자동차 ☐ 건설기계		차명(건설기계명)				형식			
			정원(승합)		명		중량(화물)		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
							규격(건설기계)		☐ ()	
		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 ☐ 용도()							
확 인 결 과	지급 여부		☐ 가 ☐ 부		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		☐ 부착가능 ☐ 부착불가			
	지급불가 사유									
	기본 보조 금	기본	원 (₩)							
		저감장치 부착불가	원 (₩)							
	추가 보조금 (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)		신차	원 (₩)						
			중고차	원 (₩)						
※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.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.5톤 미만 전기·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(단, 상한액 범위내)										
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
한국자동차환경협회 (인)										
※ 참고사항 1.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(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)에 ‘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’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 ※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‘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’ 별도 실시 2. ‘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’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(성명, 사용본거지)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

확인번호		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					
소유자	성명		생년월일				
	주소						
	전화번호		FAX				
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	등록번호		차대번호				
	☐ 자동차 ☐ 건설기계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 ☐ 차량명(건설기계명) : 정원(승합) : 명 규격(건설기계) () 중량(화물) : 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				
확인 항목	동일성 확인	-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		확인 결과	☐ 일치 ☐ 불일치 ☐ 식별불가		
	원동기	- 원동기(시동)작동 여부			☐ 가능 ☐ 불가		
	동력전달장치 (변속기포함)	- 변속기의 작동 여부 -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(전·후진)			☐ 가능 ☐ 불가 ☐ 전진 또는 후진 불가		
	조향	- 좌·우 작동 여부			☐ 가능 ☐ 불가		
	제동	- 제동 가능 여부			☐ 가능 ☐ 불량		
	유압장치 (건설기계)	- 유압유의 상태, 유압유 누출 여부			☐ 양호 ☐ 불량 ☐ 단순 불량(유압유부족)		
		-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			☐ 양호 ☐ 불량 ☐ 단순 불량		
		-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			☐ 양호 ☐ 불량 ☐ 단순 불량(소음)		
	그외 주요 부품	- 차체 외관 상태	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 에 미반영		☐ 양호 ☐ 불량 ☐ 일부 파손(찌그러짐)		
		- 완충장치 상태(차량)			☐ 양호 ☐ 불량		
		- 유리창 파손 상태			☐ 양호 ☐ 불량 ☐ 단순 파손(일부파손)		
		-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			☐ 양호 ☐ 불량 ☐ 단순 불량(공기압부족)		
		- 등화장치 설치 상태			☐ 설치 ☐ 미설치 ☐ 단순 파손(일부 깨짐)		
	첨부물	사진 4매(전·후·좌·우면), ※ 온라인 이용시 동영상 첨부					
	판정 결과	정상 가동 여부	☐ 가 ☐ 부				
불가 사유			종합의견				
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(정상가동) 여부를 확인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확인자 : (인)							
한국자동차환경협회 (인)							

[별지 4호 서식]

확인번호	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FAX	
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	등록번호		차대번호	
	☐ 자동차 ☐ 건설기계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		
		정원(승합) : 명		규격(건설기계) ()
		중량(화물) : 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	
	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	
	주행거리		사용연료	
보조금신청금액		원 (₩)		
폐차	말소 일자		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	
폐차 후 신차구매	자동차 (건설기계) 제원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		
		☐ 차량명(건설기계명) :		
		정원(승합) : 명		
		중량(화물) : 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	
	등록일자(예정)	년 월 일 (년 월)		
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,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			년 월 일	
			신청자 :	(서명 또는 인)
시흥시장 귀하 ※ 서명 인정됨(단,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)				
※ 첨부서류 1.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(원본 또는 사본) ※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.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.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				

[별지 5호 서식]

확인번호	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FAX	
신규 (중고차 포함) 구매 차량 정보 (지게차 또는 굴착기)	등록번호		차대번호	
	자동차(건설기계) 제원	☐ 연식()년 ☐ 배기량()CC ☐ 용도: ()		
		☐ 차명 : ☐ 정원(승합) : 명		
		☐ 적재중량()톤 ☐ 총중량()톤		
	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	
	제작일자	년 월 일	사용연료	
	추가 보조금신청금액	☐ 신차	☐ 중고차	원 (₩)
폐차 관련	등록번호		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	
	말소 일자			
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,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시흥시장 귀하 ※ 서명 인정됨(단,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)				
※ 첨부서류 1.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(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) 2.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.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				

[참고 1]

위임장

(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)

수임자 (신청자)	주소		
	성명	(인)	
	생년월일		
위임자	주소		
	성명	(인감도장)	
	생년월일		
대상차량정보	구분	자동차번호	자동차명
	폐차대상 (노후경유차)		

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붙임 :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

2023년 월 일

위임자 : (인감도장)

※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

★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같음

[

참고 2] 인터넷 접수방법

순서1) 회원가입(배출가스 등급제)

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<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>) 접속

② 회원가입 클릭(홈페이지 오른쪽 상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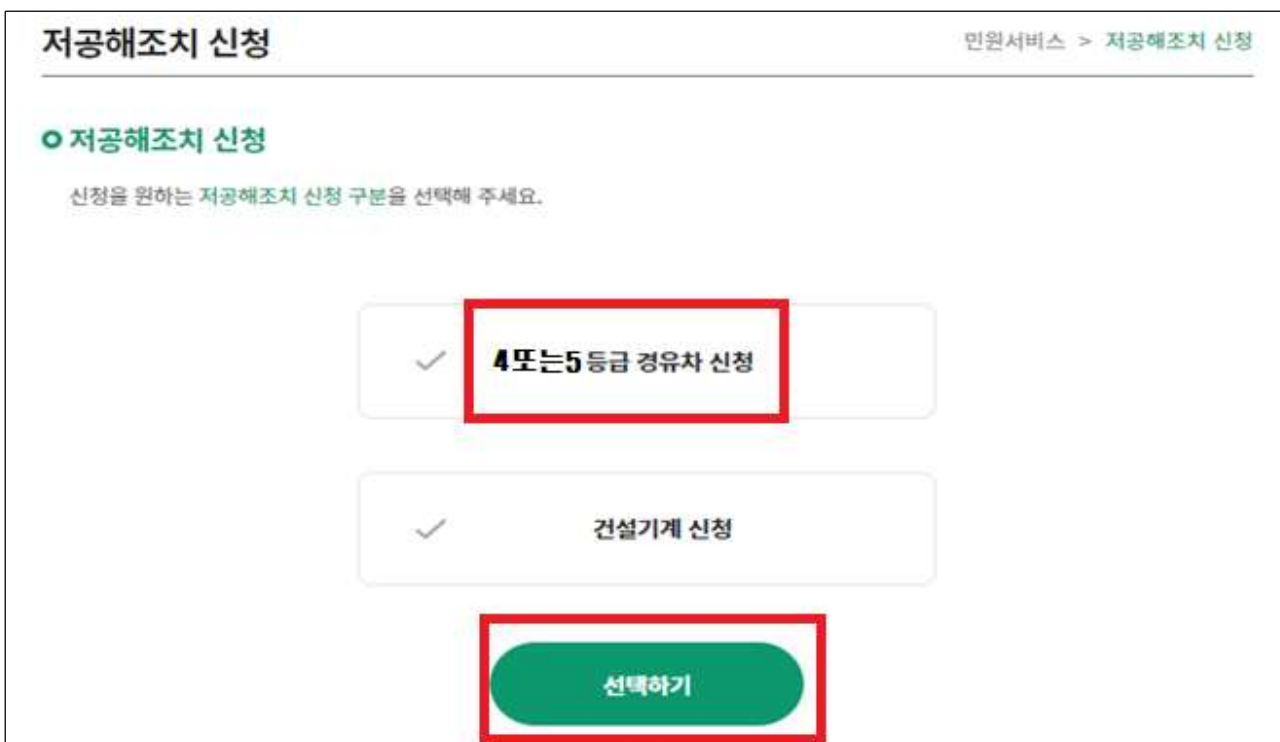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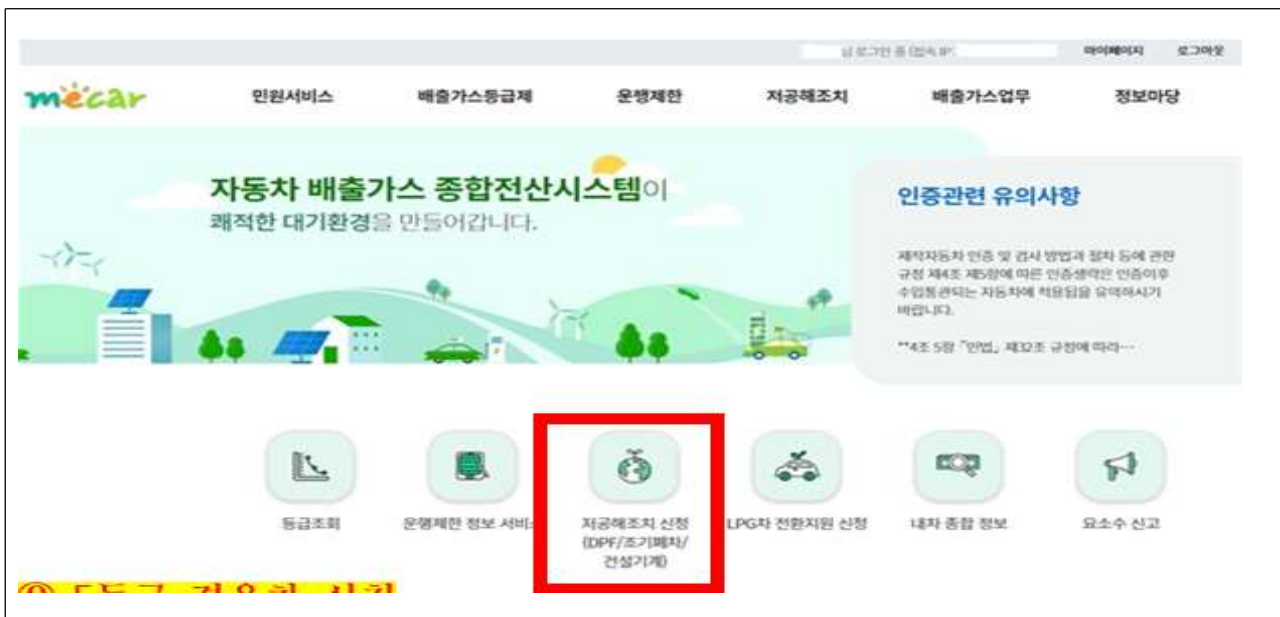
일반회원 가입 ⇒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⇒ 만 14세 이상가입
⇒ 본인인증 클릭 ⇒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⇒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
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⇒ 문자인증 클릭 ⇒ 개인정보 입력 ⇒ 확인 클릭 ⇒
인증번호 6자리 입력 ⇒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⇒ 가입신청 클릭

순서2)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

<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>

◆ 저공해조치 신청(DPF/ 조기폐차/ 건설기계) 클릭⇒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
⇒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(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)

저공해조치방법(*) **조기폐차** 클릭⇒저공해신청 클릭



○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

※장착불가 및 미개발장치 건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,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.
 ※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지역번호 + 120)

*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.

신청자명			
*휴대전화	010		
*자동차 등록번호			차량조회
차대번호			
*저공해조치 방법	☐ 저감장치 부착 ☒ 조기폐차		
차명			
연식			
소유자명			
주소			
신청지자체			
전화번호	[선택]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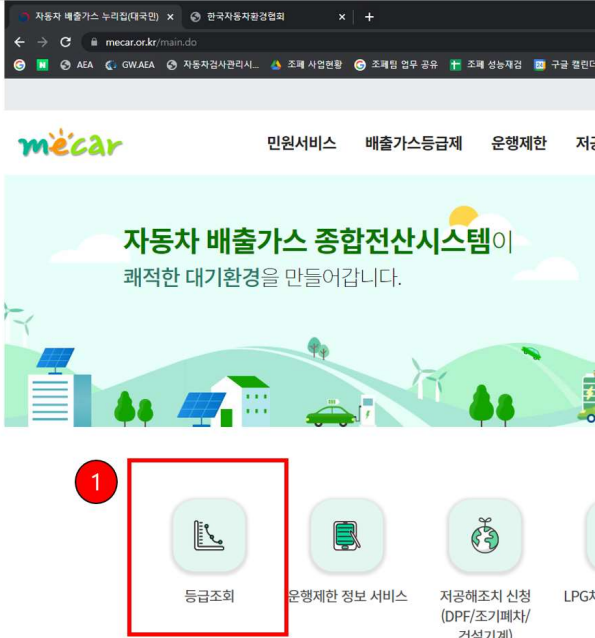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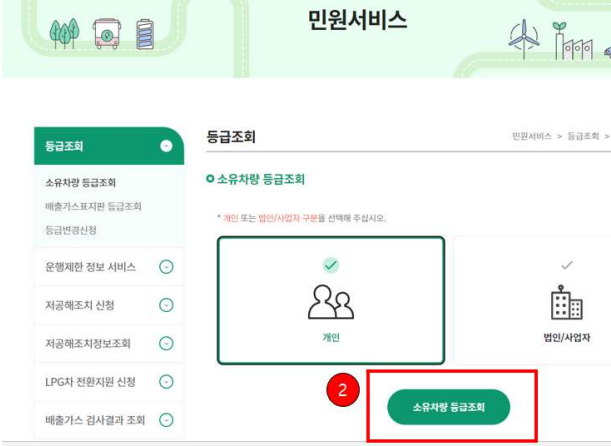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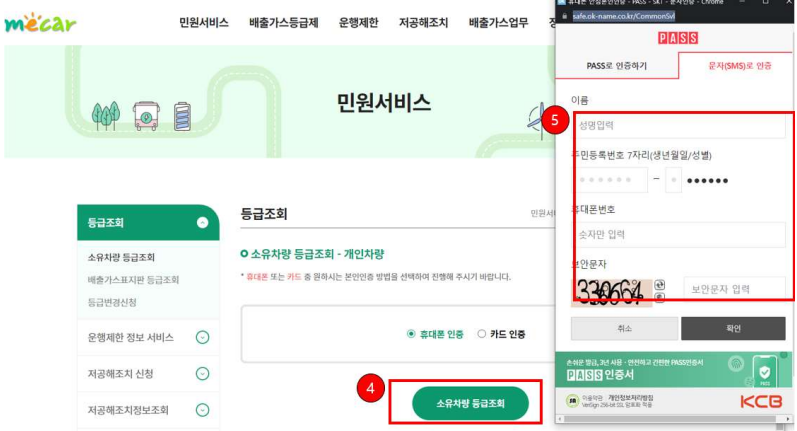
신청취소	<input checked="" type="button" value="저공해신청"/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 법인신청 방법

- 회원가입 :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
- 차량신청 :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⇒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⇒ 차량조회 ⇒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목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

참고 3] 차량 등급 조회(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)

순번	구분	MECAR 화면
1	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.mecar.or.kr ①등급조회 클릭	
2	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/사업자 ②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	
3	③차량번호 입력	

4	④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⑤휴대폰 인증	
5	⑥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※ 4,5등급 조회	